

계룡시조례 제 호

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계룡시각종위원회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일비 및 여비 (이하 “실비변상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제3조 (일비)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 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